

# 체육위원회규정

시행 : 2020.04.09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 체육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총장에게 건의한다.

1. 체육활동의 계획 및 조정
2. 본교 체육진흥을 위한 후원사업
3. 운동부의 신설 또는 폐지
4. 선수의 선발, 훈련, 장학 및 성적평가
5. 체육부의 예산 편성 및 결산
6. 체육부의 운영 계획
7. 체육부장, 감독, 코치의 임명
8. 체육부 소속 선수의 경미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
9. 기타 경희대학교의 체육정책 수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은 학무부총장(국제), 기획조정처장, 국제캠퍼스 교무처장, 국제캠퍼스 미래혁신원 단장, 입학처장, 인사처장, 체육대학장, 체육부장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학무부총장(국제)으로 한다.

제4조(임기)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으로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즉시 서면으로 총장에게 보고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체육부의 행정직원으로 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,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

제8조(보칙)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## 부 칙

1. 본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체육진흥에 관한 규정 및 체육특기자 심사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본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